대 구 지 방 법 원

제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5나304202 손해배상(자) 원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- 1. 최〇〇
- 2. 신●●
- 3. 황◎◎

피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- 1. 고◇◇
- 2. 00택시 주식회사
- 3.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

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가단4023 판결 변 론 종 결 2015. 9. 23. 판 결 선 고 2015. 10. 23.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
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최○○에게 36,437,111원, 원고 신●●에게 36,287,111원, 원고 황◎◎에게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2. 17.부터 2015. 10. 2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- 2.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- 3. 소송총비용 중 50%는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- 4.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최○○에게 438,801,379원, 원고 신●●에게 433,801,379원, 원고 황◎◎에게 21,000,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2. 2. 17.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

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최○○에게 274,546,721원, 원고 신●●에게 272,096,721원, 원고 황◎◎에게 16,000,000원 및 위

각 돈에 대하여 2012. 2. 17.부터 2012. 5. 2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나. 피고

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최○○에게 133,472,517원, 원고 신●●에게 131,372,517원, 원고 황◎◎에게 3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. 2. 17.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고◇◇은 2012. 2. 17. 00:42경 대구31바50**호 쏘나타 택시(이하 '피고 차량'이라 한다)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사랑채 식당 앞 도로를 MBC 네거리에서 2군 사령부 방면으로 향하는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의 횡단보도 직전 도로를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망 최■■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, 미처 피하지못하고 횡단보도로부터 4.3~7.7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을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03:0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고 한다).

나. 원고 최○○는 망인의 부친, 원고 신●●는 망인의 모친, 원고 황◎◎은 망인의 조모이다. 피고 OO택시 주식회사는 피고 고◇◇의 사용자이자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 고,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 신진택시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.

【인정 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5, 6,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갑 제11호증의 15, 18, 을 제1, 2, 4, 5,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나. 다만, 망인에게도 야간에 사고 장소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부터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를 건넌 과실이 있고,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들에 대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.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, 망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,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28, 31의각 일부 기재는 믿기 힘들고, 갑 제7호증의 1, 2, 갑 제11호증의 18, 을 제4, 5,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1호증의 8, 21, 23, 24, 25, 33, 34, 갑 제12호증의 1, 2,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관한 앞서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.

다. 그 비율은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, 갑 제11호증의 36의 기재, 갑 제11호증의 11, 25의 각 일부 기재, 갑 제11호증의 23 내지 25, 갑 제12호증의 1, 갑 제13호증의 5, 6, 7, 19, 20, 26, 27의 각 영상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다음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종합해 볼 때, 10%로 봄이 상당하므로,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90%로 제한한다.

- 1) 피고 고◇◇은 2008. 7. 10.부터 2010. 2. 11.까지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및 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고, 그 중 1회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되었으며, 2010. 2. 11.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, 이 사건 사고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이다.
- 2)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대구 MBC 네거리 방면에서 2군 사령부 방면으로 진행되는 경사진 오르막길 2차선 도로로서(이하 '이 사건 도로'라고 한다)나, 차량의 제한속도는 70Km/h이고, 이 사건 도로에서 망인이 사고를 당한 지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, 바로 4~7m 이내에는 횡단보도가 존재한다(이하 '이 사건 횡단보도'라고한다).
- 3) 이 사건 도로의 우측(사고 당시 피고차량 진행방향 기준)에는 MBC 후문과 식당 및 주택가가 위치하고 있는데, 이를 연결하는 길이 이 사건 도로의 시작 부분과 직각으로 만나고 있으며, 위 MBC 후문 쪽에서 이 사건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이에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인도의 가장자리 선을 따라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설치되어 있다.
- 4) 통상 택시운전기사와 같이 시내 중심을 많이 통행하는 사람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횡단보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 사건 도로의 시작 부분이 주택가로부터 나오는 길과 접하고 있어 그로부터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으며, 피고 고◇◇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

¹⁾ MBC 네거리에서 대구동부시외버스정류장 쪽으로 가는 방면과 위 2군 사령부 쪽으로 가는 방면이 갈라지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. 위 갈라지는 부분에는 연석으로 둘러싸여 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는 교통섬이 존재하고 있고, 교통섬의 끝부분은 횡단보도와 연결되어 있다.

3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,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,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.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/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.

【인정 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3호증,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경험칙, 변론전체의 취지

가. 망인의 일실수입

- 1) 인적사항: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.
- 2) 직업, 소득, 가동기간

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2017. 3. 1.부터 65세가 되는 2057. 1. 6.까지 수련의, 전공의, 전문의로 종사하면서 총 747,602,758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,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으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갑 제8, 14, 15, 16, 21, 2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의과대학 1학년이었던 망인이 남은 5년간의 엄격한 학사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한 후 수련의로부터 전문의에 이르기까지 자격 구비에 필요한모든 시험과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된다고는 할수 없으므로,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망인은 사고 당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망인의 일실 수입은 이를 기초로 산정하기로 한다.

나. 원고 황◎◎의 치료비

원고 황◎◎은 망인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아 주요우울장애에 걸려 2012. 4. 10.부터 2012. 8. 23.까지 서대구대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으로 100만 원 상당의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, 갑 제10호증, 갑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 위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할 정도의 정신병적 질환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(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는 2011. 8. 6.부터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었다).

다. 장례비

300만 원(원고 최○○ 지출)

라. 책임의 제한

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90%이다.

마. 위자료

1)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, 피해자의 연령, 직업, 사회적 지위, 재산과 생활상태,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,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·과실의 정도,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,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,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(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8다41377 판결,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).

2)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, 장소 등 제반사정, 피고 고◇◇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고의·과실의 정도, 피고 고◇◇의 사고 후의 태도,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정도, 망인의 연령과 가족관계, 망인이 사고 당시의과대학 1학년으로서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동아리활동 그리고 해외봉사활동 등 대외활동도 열심히 하던 우수한 인재였던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할 때, 위자료의 액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가) 망인: 60,000,000원

나) 원고 최○○ : 30,000,000원

다) 원고 신●●: 30,000,000원

라) 원고 황◎◎: 10,000,000원

바. 공제(상계)

1) 기지급 치료비 2,021,602원 중 망인의 과실분 10%에 해당하는 202,160원

2) 형사공탁금 5,000,000원

사. 상속관계

1) 망인의 재산상속인 및 상속지분 : 원고 최○○, 원고 신●● 각 1/2

2) 상속금액: 335,983,538원(재산상 손해 275,983,538원 + 위자료 60,000,000원)

3) 원고 최○○ : (위 335,983,538원 × 1/2 =) 167,991,769원

4) 원고 신●● : (위 335,983,538원 × 1/2 =) 167,991,769원

아. 소결론

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최○○에게 200,691,769원(= 상속금액 167,991,769원 + 장례비 270만 원 + 위자료 30,000,000원), 원고 신●●에게 197,991,769원(= 상속금액 167,991,769원 + 위자료 30,000,000원), 원고 황◎◎에게 10,000,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인 원고 최○○에 대한 164,254,658원, 원고 신●●에 대한 161,704,658원, 원고 황◎◎에 대한 5,000,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2. 2. 17.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. 5. 28.까지,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 최○○에 대한 36,437,111원, 원고 신●●에 대한 36,287,111원, 원고 황◎◎에 대한 5,000,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2. 2. 17.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. 10. 23.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 론

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,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,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,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,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 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성수

판사 김수홍

판사 이정현

손해배상액 계산표

[기초사항]

1-1-101				
사건번호	2015나	304202	건명	손해배상(자)
성 명	망 최	정윤	유형	사망
성별(남1,여2)	2	사고시 연령		20세 1개월 10일
생년월일	1992-1-7	기대여명		64.88년
사고 발생일	2012-2-17	여명 종료일		2076-12-18
가동연한(세)	60	가동 종료일	2052-1-6	

감정일

ſ	잌	싀	수	인	1

	기간 초일	기간 말일	노임단가	일수	월소득	생계비	m1	호프만1	m2	호프만2	m1-2	적용호프만	기간일실수입
1	2012-2-17	2012-4-30	75,608	22	1,663,376	33%	2	0.9958	0	0.0000	2	0.9958	1,104,259
2	2012-5-1	2012-8-31	80,732	22	1,776,104	33%	6	5.9140	2	1.9875	4	3.9265	4,649,248
3	2012-9-1	2013-4-30	81,443	22	1,791,746	33%	14	13.5793	6	5.9140	8	7.6653	9,156,180
4	2013-5-1	2013-8-31	83,975	22	1,847,450	33%	18	17.3221	14	13.5793	4	3.7428	4,609,757
5	2013-9-1	2014-4-30	84,166	22	1,851,652	33%	26	24.6369	18	17.3221	8	7.3148	9,029,642
6	2014-5-1	2014-8-31	86,686	22	1,907,092	33%	30	28.2124	26	24.6369	4	3.5755	4,545,871
7	2014-9-1	2015-4-30	87,805	22	1,931,710	33%	38	35.2074	30	28.2124	8	6.9950	9,008,207
8	2015-5-1	2052-1-6	89,566	22	1,970,452	33%	478	262.6667	38	35.2074	440	205.7843	270,325,390
9													
10													
	(※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) 일실수입 합계액(원): 312,428,554												
	[기타 손해]												

0원

0원

0원

(1) 향후 치료비	(소요금액)	(지출시기)	m	(사고시현가)
ㄱ.반흔교정술				0원
ㄴ.금속제거술				0원

(2) 기왕 개호비

(인정일수)	(1일비용)	(총액)
		0원

(3) 향후 개호비 (4) 기왕 치료비 (5) 일실퇴직금

(6) 보조구 0원 (7) 장례비 3,000,000원 일실수입 등(장례비제외) 312,428,554원

[과실상계] 10%

과실상계후 일실수입 등 281,185,698원 과실상계후 장례비 2,700,000원

[공제]

지급치료비 2,021,602원 중 원고 과실분 202,160원 형사공탁금 5,000,000원

[망인의 재산산 손해배상액] 275,983,538원

[위자료 및 합계]

	원고	위자료	재산상 손해	재산손해+위자료	상속지분	상속금액	최종합계
0	망 최정윤	60,000,000	275,983,538	335,983,538			
1	최성규	30,000,000	2,700,000	32,700,000	1/2	167,991,769	200,691,769원
2	신정애	30,000,000		30,000,000	1/2	167,991,769	197,991,769원
3	황의남	10,000,000		10,000,000		0	10,000,000원

- 11 -